

파주시 생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

□ 제안이유

- 현행 조레중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체입법 조항중 법령의 근거없이 규제를 강화한 조항에 대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6)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건축폐기물 구분 조항 삭제(안제2조3호)
-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청결유지 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한 대청소 실시의무 삭제(안제4조제2항)
-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으로서 주민자율적 실천계도사항인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의무삭제(안제8조)
- 법령의 정수제한 규정의 폐지로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인 폐기물처리업허가 제한규정 삭제(안제12조 제1, 2, 3항)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환경부훈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규정 삭제(안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보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의무규정 삭제(안제16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중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를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조례정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